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·관리에 관한 조례안

(박마루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79

발의년월일 : 2018년 2월 12일
발 의 자 : 박마루, 강감창, 장인홍, 이순자, 김기대, 이상묵, 최영수, 진두생, 성백진, 강성언, 송재형, 강구덕, 이정훈, 문형주, 박기열, 김동욱, 김선갑 의원(17명)

1. 제안이유

○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, 그 피해 정도가 급속도로 커짐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, 이로 인해 대기환경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.

○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화학물질 침투성과 미세먼지 흡수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유해물질 배출량이 적어 성인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, 교실 등 학교 실내 공간에서 장시간 지내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1조～제3조)

나.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수립 및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4조～제6조)

다. 실태조사 실시 근거 및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7조～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학교보건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참조)

다. 기　　타 :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·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학교보건법」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,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.
2. “학교 실내 공기질”이란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·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)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

을 위한 유지·관리 계획(이하 “관리 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한다.

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.

1.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·관리 기준 및 지원 방안
2.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
3.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
4.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,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5조(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)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·관리 정책의 수립·시행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.

1.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·시행
2.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
3.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・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담당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, 교육계, 학계, 관련 전문기관, 학부모,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⑥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・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8조(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)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·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·보급하고, 교육·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·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·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(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), 제7조(실태조사), 제8조(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)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○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 설치·운영비용(조례안 제5조)

○ 학교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 비용(조례안 제7조)

○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 비용(조례안 제8조)

나. 전제

1) 안 제5조에 따른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 설치·운영비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'학교미세먼지관리'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'미세먼지 관리자문단 운영'으로 갈음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(참고자료 첨부)

2) 안 제7조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실태조사 비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와 의견을 반영하여 추계

※ 서울시교육청은 외부 공기질 측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학교 내 공기질 측정 실태조사를 연1회 실시한다고 가정함

3) 안 제8조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'학교미세먼지관리'사업에서 미세먼지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지원 등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(참고자료 첨부)

4)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

5)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후 5년(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 발생)

라. 방법

○ 학교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학급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기질 검사 비용을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산출함

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 비용≒3,149,780천원(연평균 629,956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(2019)	2차년도 (2020)	3차년도 (2021)	4차년도 (2022)	5차년도 (2023)	합계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실태조사 비용 (조례안제7조)	629,956	629,956	629,956	629,956	629,956	3,149,780
	소계(b)	629,956	629,956	629,956	629,956	629,956	3,149,780
□총 비용(b-a)		629,956	629,956	629,956	629,956	629,956	3,149,780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 남승우
사업평가팀장 황훈
분석관 원동아
☏ 02-3705-1285
e-mail : dongya1@seoul.go.kr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○ 학교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 비용

2. 세부추계내역

○ 학교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 비용

- 총비용 ≒ 3,149,780천원(연평균 629,956천원)

• **총비용**=$\sum_{i=1}^{5}$(연간학교실내공기질실태조사비용)i

- i = 비용추계 연차(2019~2023)
- 연간 실태조사 비용= 초등학교(609개교) 총금액 + 중학교(384개교) 총금액 + 고등학교(321개교) 총금액 + 특수각종 학교(43개교) 총금액 =629,956천원

(단위 : 개교, 천원)

학교급별	학교수	총금액	평균금액
초	609	282,160	464
중	384	169,738	442
고	321	155,191	483
특수, 각종	43	22,867	532
합계	1,357	**629,956**	480

자료 :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
※서울시교육청에서 국회의원(김병욱)요구 자료로(2018.1.10.)제출한 내부자료임

【참고】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 상세내역

○ 사 업 명 : 학교미세먼지관리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	**☑연례반복**
사업위치	**서울특별시교육청**
총사업비	**총 4,930,000원**
사업내용	○ 대기오염(미세먼지)에 대한 선도적 대응으로 학생 및 교직원 건강권 보호·증진
사업형태	**☑직접수행 □자치단체 보조 □민간이전 □출연출자 □직민간위탁 □기타**
사업시행주체	**체육건강과**

□ 세부 산출내역

○ 미세먼지 관리 자문단 운영

- 대상: 학교 미세먼지 관리위원회 위원(학교 관계자, 학부모, 전문가 등)
- 내용: 학교 미세먼지 정책 및 사업 추진계획 검토, 사업 평가 및 주요사항 자문 등
- 소요예산: 2,900천원

· 운영비				
- 참석수당	100,000원×23명	=	2,300	천원
· 업무추진비				
- 협의회비	20,000원×10명×3회	=	600	천원

○ 미세먼지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

- 내용: 미세먼지 관련 홍보 리플릿, 동영상 제작·보급
- 소요예산: 20,300천원

· 운영비				
- 인쇄물및유인물제작비	3,660원×5,000부	=	18,300	천원
- 수임및자문료	50,000원×3명×4회	=	600	천원
- 기타운영수당	60,000원×5명×2회	=	600	천원
· 업무추진비				
- 협의회비	20,000원×10명×4회	=	800	천원